

【사건번호 2018-010】 국립춘천박물관 문화유물 3D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 국립춘천박물관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문화유물 3D데이터*
 - * 석가여래좌상 2점, 약사여래좌상(보물 제1873호) 1점
- 데이터 신청 목적
 - 실감형 전시 서비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실감형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박물관을 상대로 문화유물 3D데이터를 신청하였으나 제공거부 됨
 - 다른 국공립박물관에서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3D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데이터만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 문화재청의 경우 문화재의 3D데이터를 신탁시스템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등 문화유물 3D데이터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이 제각각인바, 문화유물 3D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원함

나. 피신청인

- 이 사건 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결과, 대상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이나 유물의 3D데이터는 춘천박물관이 보유·관리하며 스스로 공공데이터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이 사건 데이터는 현재 춘천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
이므로 해당 보고서 발간 이후에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에 따라 제공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보고서 발간 전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이 불가함

3. 사실조사

가.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

- 이 사건 데이터는 문화유물에 대한 3D데이터로, 해당 유물의 제작기법 및
조성 배경을 연구한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성됨
- 피신청인은 국가에서 설립·운영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피신청인이 소장하는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할 때에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에 따름
- 동 규칙은 복제신청 및 승인절차(제3조), 복제요금의 납부 및 감면(제5조),
소정의 준수사항(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칙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유물로서 박물관 소장품을
복제할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자료 관리 규정」에 의하면 박물관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복제는 「국립
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에 따름(제6조)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다.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유물을 3D방식으로 스캔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이에 근거한 제공거부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함
 - ※ [참고] 대통령기록관 선물 3D스캔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2017-030): 신청인은 해외 국민들로부터 받은 선물의 3D데이터를 신청하였으나, 사실조사결과 공예품, 조각 등 미술저작물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스캔한 3D데이터는 미술저작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여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사전조정함
- 이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2.10.11.선고 2010두18758판결)
- 또한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함(대법원 2012.10.11.선고 2010두18758판결, 대법원 2016.5.24.선고 2014두38033판결)
- 이 사건 데이터는 유물을 있는 그대로 스캔한 3D데이터로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 진술만으로는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한편, 피신청인은 보고서 발간 이후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에 따라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야 하므로(제4조)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제공되는 데이터는 3차원 입체정보 및 색상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ICF 파일 등), 데이터의 용량은 약 50메가바이트로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제17조제1항각호)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관련 보고서 발간 전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발간 후에도 국립박물관 소장유물복제규칙에 따라 제공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였으나,

-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데이터가 제공될 경우 피신청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야 하므로(제4조) 피신청인의 제공거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o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제공범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되, 제공되는 데이터는 3차원 입체정보 및 색상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ICF 파일 등), 데이터의 용량은 약 50메가바이트*로 함
 - ※ 피신청인은 조정부 회의('18.5.3)에서 문화재 스캔데이터의 특성상 고용량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위품·복제품 유통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를 요청하였고, 이를 신청인이 양해하였다는 점을 고려함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 데이터 제공기관 등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데이터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저작권법 제37조의2 참조)

5. 조정결과

- o 위와 같은 조정안을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료